

#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299
----------	------

2013년 7월 12일  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4월 11일, 김기만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13년 4월 15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(2013년 7월 4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만 위원)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보육조례」 제4조제2항5호를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변경하려는 것임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양재대)

#### 1)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‘지방의회의원’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보육조례」에서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제4조제2항제5호의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〈신·구 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정안
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육 전문가</li> <li>2.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</li> <li>3.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</li> <li>4. 관계공무원</li> <li>5. <u>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</u></li> </ol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</p>	<p>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육 전문가</li> <li>2.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</li> <li>3.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</li> <li>4. 관계공무원</li> <li>5. <u>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</u></li> </ol> <p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</p> <p>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</p>

#### 2)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

## (1)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개요

- 보육정책위원회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1)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,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.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에서는 상위법령 및 「서울특별시 보육조례」에 따라 ‘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’를 구성·운영 중임(별첨자료1.현행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참조)

## (2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개정 취지 및 내용

- 2012년 6월 28일,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음.
- 개정 취지는,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합리화하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 주요내용은 ▲보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▲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
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되어 왔던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.

- 또한,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7조2)에서는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여 각종 심의·의결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.
- 이상의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감안해볼 때,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조례 해석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- 또한, 현행 “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”에서 “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비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 위원을 구성한다면 상위법과의 상충되는 문제는 없음.
-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.

---

2)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7조(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)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·심의회·협의회 등(이하 “위원회등”이라 한다)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·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.

1.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
2. 본인,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

□ 별첨 참고자료 1. 현행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및 위원 정수 준수 여부

○ 임 기 : '13. 2.15 ~ '15. 2.14(2년)

○ 명 단(15명)

구 분	위원 구성	소 속(직위)	개정법령규정	위원 구성 비율 준수 여부
계	15명		15명 이 내 (100%)	
보 육 전 문 가	2명	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	3명 이 하 (20% 이 하)	준 수
학 부 모 대 표 및 공 익 대 표	7명	3명 000 어린이집 학부모 000 어린이집 학부모 000 어린이집 학부모 4명 한국다문화보육학회 감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장	6명 이 상 (45% 이 상)	준 수
보 육 교 사 대 표	2명	000 어린이집 교사 000 어린이집 교사	1.5명 (2명)이 하 (10% 이 하)	준 수
어 린 이 집 원 장	2명	000 어린이집 원장 (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) 000 어린이집 원장 (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)	1.5명 (2명)이 하 (10% 이 하)	준 수
관 계 공 무 원	2명	서울시교육청 파견 교육협력관 출산육아담당관	2명 이 하 (15% 이 하)	준 수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‘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’라고 했을 경우,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으로 ‘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’라는 표현이 적합한 측면이 있음. 이 사안은 서울시의회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4조제2항5호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4조(구성) ① 생략 ② 생략 1. ~ 4. 생략 <u>5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</u> ③ 생략 ④ 생략	제4조(구성) ① (원안과 같음) ② (원안과 같음) 1. ~ 4. (원안과 같음) <u>5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</u> ③ (원안과 같음) ④ (원안과 같음)